제 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

의안번호	제 1 호	심의의결사항
의결일자	2022. 12. 22.	
공개여부	공개	

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(안)

제 출 자	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 국 희
제출일자	2022. 12. 22.

1. 의결주문

○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○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분류	기관명	위반사항	위반근거	처분(안)
방사선 투과검사	A	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	법 제59조제3항	**과징금 1억 2천만원**

4. 검토사항 : 별지 참조

5. 참고사항 : 없음

<별지> 특별검사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

별지 | **특별검사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**

□ 개 요

○ ’22. 7월 특별검사 결과,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

□ 과징금 처분절차

위반사실 확인 ➡ 사전 통지 ➡ 사업자 의견청취 (10일이상) ➡ 행정처분(안) 작성 ➡ 원안위 의결 ➡ 행정처분 명령

* (근거)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및 제27조의 2(제출의견의 반영)

□ 위반사항

기관명	위반사항	위반근거	비 고
A	**<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>** ▣ **작업장1** : ㈜○○ / 경북 경주시 ·(작업기간) ‘22.3.~ ‘22.7.중 5일 / 총 1,000매 ·(안전관리자) 조○○(일반면허 제○○○○호) ·(작업종사자) 김○○, 송○○ ·(사용선원) Ir-192 1.48 TBq, 0.93 TBq ▣ **작업장2** : ○○기업 / 경북 경주시 ·(작업일자) ‘22.7.9. / 총 60매 ·(안전관리자) 강○○(일반면허 제○○○○호) ·(작업종사자) 최○○ ·(사용선원) Ir-192 1.48 TBq **[작업장 1, 2 공통 적용]**		
	○ 신고된 사용시설 내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나, 신고하지 않은 사용시설 외부공장(shop)에서 검사를 수행함	원안법 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59조제3항	
	○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전에 작업현장 확인, 적합한 작업방법 및 절차 수립, 방사선장해방지조치, 종사자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나, 이를 이행하지 않음	원안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	

기관명	위반사항	위반근거	비 고
A	○ 방사선작업은 조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하나, 1인이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함 ○ 방사선투과검사장비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방사선관리구역 및 방사선감시구역 경계에서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야 하나, 방사선측정기를 휴대하지 않음 ○ 방사선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방사선투과검사장비 안전장치 락슬라이드바는 작업 직전에 해제하고 투과검사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나, 작업 편의를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에 이물질을 삽입해 임의 해제하고 작업을 수행함 ○ B(U)형 운반물(Ir-192 경우 1TBq 이상)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책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운반하여야 하나, 운반책임자 없이 작업종사자가 운반함 - 아울러,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방사선원을 운반함	원안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	
	○ 방사선원 사용 시 사용일지에 방사선원, 선원 반·출입, 안전관리장비 등을 기록하여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나, 방사선작업 관련 사항을 일체 기록하지 않음	원안법 제58조 및 제59조제3항	
	○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종사자 피폭관리를 위해 개인선량계(TLD) 및 직독식 개인선량계(ADR)을 착용하여야 하나, 종사자 최○○ 등 6인은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음	원안법 제59조제3항 및 제91조	

기관명	위반사항	위반근거	비 고
A	**[작업장 1 적용]** ○ 방사선작업, 작업대기 및 휴식 중에는 방사선조사장치의 도난·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나, '22.7.9. 오전작업 종료 후 오후작업 시작 전까지 감시인 없이 사용시설 내에 방사선조사장치를 방치함 * 오전작업 11시 종료 / 오후작업 19시 시작 ○ 사용시설 이외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의 사방에 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하나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○ 사용시설 이외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Ir-192 0.74TBq 이하에 상응하는 방사성동위원소만을 사용하여야 하나, '22.7.9. Ir-192 0.93TBq를 사용하여 작업함 ○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 사용시설 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를 장착하고 사용하여야 하나, 이를 장착하지 않고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함 ○ 방사선원 전용차량 운반 시 운반함을 갖추고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나, 출장소 저장시설에서 작업장1로 운반함 없이 방사성물질을 운반함	원안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	

※ A업체 과징금 처분현황 : 2017. 2. 24. 1억2천만원 (원안법 제59조제3항 위반)

□ 행정처분(안) : 과징금 1억 2천만원 (1차 위반, 50%가중)

□ 과징금 관련 법령

관련 법령	내용
원자력안전법	**제59조(기준준수의무 등)** ① ~ ② (생 략) ③ **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**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**안전관리규정을 준수**하여야 하며,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	제57조(생산판매·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)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·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·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(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)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 략) 7. **제59조제3항**·제70조·제94조·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. (생 략)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하여야 한다.
원자력안전법 시행령	**제175조(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)** 법 제17조제2항(법 제24조제2항, 법 제32조제2항,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48조제2항(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법 제57조제2항(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.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[별표 11] **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**(제175조 관련) **1. 일반기준** 가. **위반행위의 횟수**에 따른 **행정처분기준**은 **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**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**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**으로 한다. 나. 처분권자는 **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**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**2분의 1 범위**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**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** (이하 생략)

관련 법령	내용

1) 감경 사유

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**사소한 부주의**나 **오류**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, **신속히 사후 조치**를 취한 경우

나) 위반행위의 **내용 및 정도**가 **경미**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**피해**가 **적다**고 **인정**되는 경우

다) 해당 **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**로서, **2년 이상 관련 업무**를 **모범적**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) 가중 사유

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**고의나 중대한 과실**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나) **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**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**피해가 크다**고 인정되는 경우

다) **위반행위의 기간, 위반횟수** 등에 비추어 **가중이 필요**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1) ~ (9) (생 략)

(10)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**1차 위반**		2차 위반		3차 이상 위반	
		업무정지 기간	과징금 금액	업무정지 기간	과징금 금액	업무정지 기간	과징금 금액
바. 법 **제59조제3항**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 제7호	2개월	8천만원	4개월	1억 6천만원	8개월	3억 2천만원

(11) ~(14) (생 략)

□ 과태료 위반 근거조항

관련 법령	내용
원자력안전법	**제53조(방사성동위원소·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)**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(이하 "방사성동위원소등"이라 한다)를 생산·판매·사용(소지·취급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 **다만,** 총리령으로 정하는 **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**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**신고하여야 한다.**
	제58조(기록과 비치) 허가사용자·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·사용·**이동사용**·분배·저장·운반·보관·처리·배출·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**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**하여야 한다.
	제59조(기준준수의무 등)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**기술기준**을 **준수**하여야 한다. 1.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·사용시설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 2.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·사용·분배·저장·운반·보관·처리 및 배출 ② (생략)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**안전관리규정을 준수**하여야 하며,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	제91조(방사선장해방지조치)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**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** 2. 건강진단 3. **피폭관리** 4.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(생략) ③ (생략)

〈 안건 담당자 〉

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	
이경용 과 장	(02) 397 - 7330
권혁동 사무관	(02) 397 - 7337